학교 훈육 시 차별 요소 안내서
요약

뉴저지 차별금지법(Law Against Discrimination, LAD)은 종교 혹은 종파 단체 운영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 내 실제 혹은 인지된 인종, 종교, 출신 국가, 성별, 성적 지향, 장애, 성정체성 또는 성 표현 및 기타 보호되는 특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기반을 둔 괴롭힘을 금지합니다.

다음 보호 조치가 학생 훈육에 적용됩니다:

학교 훈육 정책 시행에 있어 인종, 국적, 종교, 성별, 장애 및 기타 보호되는 특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학생들을 모든 징계 절차 단계에서의 차별 즉, 교실 혹은 복도 내 행동 조절, 학교의 교장 혹은 여타 교실 외 권위자에게 불려 가기, 방과 후 나머지 학습, 정학, 퇴학, 대안학교 배정 혹은 기타 징계 조치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훈육 시행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학교 혹은 지역 내 학생을 훈육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사람 즉, 교사 및 교직원, 경비원, 학교 전담 경찰 혹은 형식적 혹은 비형식적 훈육에 참여하도록 학교에서 허가받은 경찰과 여타 대리인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모든 환경에서의 행위에 대해 학교에서 시행한 훈육에 적용됩니다. 학교 외부에서의 행위도 포함합니다.

차별금지법하에 학교 훈육 시행에 있어 차별 혹은 편견에 기반을 둔 괴롭힘에 적용될 수 있는 2가지 법적 주장이 있습니다.

차별 대우: 이 주장은 학생의 인종 혹은 기타 보호되는 특성 때문에 학생이 다르게 훈육받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이는 정책 자체가 다른 인종의 학생들을 명백히 다르게 대하는 것이 그 원인이거나 권위 있는 사람이 다른 인종이나 보호되는 특성을 지닌 학생에게 정책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불평등 효과: 이 주장은 중립적인 관행 혹은 정책이 한 인종 혹은 기타 보호되는 특징을 가진 학생에게 다른 인종의 학생에게보다 더 가혹한 영향을 주거나 장애를 지닌 학생에게 장애가 없는 학생에게보다 더 가혹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차별금지법은 학생 훈육을 시행하는 주체가 명백히 차별적인 의도로 내린 징계 결정뿐만 아니라 징계 결정이 차별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학교는 학생 훈육에 있어 편견에 기반을 둔 차별을 감시하고 다룰 의무를 지니며 이를 지키지 않는 학교에는 뉴저지 차별금지법하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NJ DIVISION ON CIVIL RIGHTS

데이터 출처 및 자세한 정보

시민권리부의 새로운 학교 훈육 시 차별 요소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훈육 시 차별 요소 안내서
데이터 중점

2018년 ~ 2019년
뉴저지 교육부
공립학교 데이터에 따르면

8.9% 모든 흑인 대상

4.1% 모든 라틴계 및 다인종 대상

3.5% 모든 아메리칸 인디언 대상

학생들이 뉴저지에서 정학 당하며
이는 백인 학생의 비율 2.7%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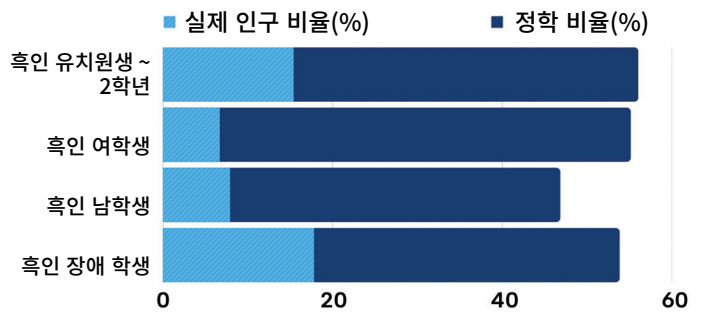

뉴저지 흑인 학생들은 백인 학생들에 비해

3.3배

더 많이 정학을 당합니다.

뉴저지의 라틴계 및 다인종 학생들은 백인 학생들에 비해

1.5배

더 많이 정학을 당합니다.

뉴저지의 장애가 있는 학생은 장애가 없는 학생에 비해

1.7배

더 많이 정학을 당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성소수자 학생들은 백인 학생들에 비해

1.7배

더 많이 정학을 당합니다.

통제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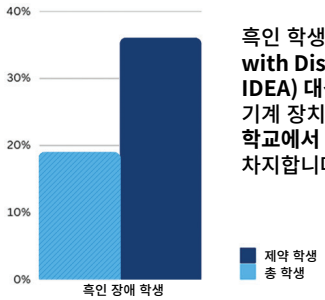

흑인 학생은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 대상 학생의 19%를 구성하지만,** 기계 장치 혹은 도구의 사용을 통해 **학교에서 통제를 받는** 학생의 36%를 차지합니다.

사법 처리 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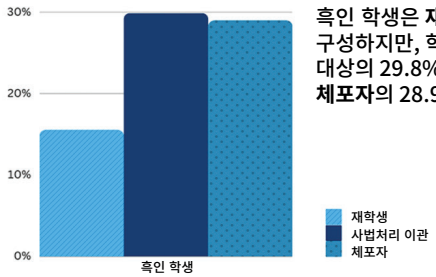

흑인 학생은 **재학생**의 15.5%를 구성하지만, 학교의 **사법처리 이관** 대상의 29.8%를 차지하며 교내 **체포자**의 28.9%를 차지합니다.

사법처리 이관 사건의 절반 이상이 필수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2018~2019학년도 수치로, 해당 사건에 총, 흉기, 불법 약물 소지/배포, 각종 차별, 폭력 위협, 성폭행 또는 성추행, 교사 모욕 또는 아동 학대 등의 요소가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NJ DIVISION ON CIVIL RIGHTS

데이터 출처 및 자세한 정보
시민권리부의 새로운 학교 훈육 시 차별 요소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훈육 시 차별 요소 안내서

차별 정책 중점

학교가 학생의 인종, 출신 국가, 성별, 장애 또는 기타 보호되는 특성을 이유로 학생을 다르게 훈육하는 경우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교직원의 의식적인 편견이 아니라 무의식에서 비롯된 차별 대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 대우는 종종 해당 정책 자체가 차별적인 경우(예를 들면, 정책 자체가 보호 계층의 학생을 다르게 대우한다거나, 그러한 의도로 만들어진 경우)에 발생합니다.

예시:

교육자가 장애 학생을 통제하거나 고립시키도록 명백히 허가하지만 장애가 없는 학생에게는 그렇지 않은 학교 정책은 장애를 근거로 차별함으로써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꼬아 놓은 머리, 땋은 머리, 콘로우, 아프로, 록스, 반투 올림머리, 페이드컷 또는 여타 흑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헤어스타일을 한 것으로 학생을 처벌하는 복장 규정은 인종을 근거로 차별함으로써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혹은 "부적절한" 문구 혹은 상징이 있는 옷을 금지하도록 복장 규정을 개정하고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 또는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를 멈춰라"는 문구의 복장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지만 남부연합기 혹은 여타 백인 우월주의 문구 혹은 상징이 있는 옷을 금지하지 않는 학교는 인종을 근거로 차별하는 것입니다.

장애 학생에게 정학 또는 퇴학 후 학교로 돌아오기 전 심리평가를 받도록 요구하지만 비슷한 행동으로 정학이나 퇴학을 당한 장애가 없는 학생에게는 학교로 돌아오기 전 이와 같은 평가를 받도록 요구하지 않는 학교는 장애를 근거로 차별하는 것입니다.

NJ DIVISION ON CIVIL RIGHTS

STATE OF NEW JERSEY DEPARTMENT OF EDUCATION

데이터 출처 및 자세한 정보

시민권리부의 새로운 학교 훈육 시 차별 요소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훈육 시 차별 요소 안내서
차별적 환경 중점

교직원의 훈육 정책 집행이 차별적인 경우(예를 들면, 정책이 겉으로는 중립적이라 할지라도 교직원, 교사, 경비원, 학교 전담 경찰관 혹은 여타 직원이나 대리인이 보호 계층의 학생을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훈육하는 경우) 학교는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반은 학교가 같은 비행 행동에 대해 인종, 출신 국가, 성별, 장애 또는 여타 보호되는 특성을 근거로 학생을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예시:

흑인 학생과 아시아인 학생이 싸움에 휘말렸을 때 학교가 흑인 학생에게는 5일 정학조치를 내렸지만 아시아인 학생에게는 2일 정학조치를 내렸다면, 누가 싸움을 시작했는지, 또 싸움에 이르게 될 때까지와 싸움 동안 학생들의 행위가 비슷했는지 불분명하더라도 이는 인종을 근거로 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담임 교사가 "지장을 주는", "무례한" 혹은 "반항" 행동 또는 여타 주관적인 행동을 이유로 백인 학생을 교장실로 가게 하지 않지만 흑인 또는 라틴계 학생은 같은 행동을 이유로 교장실로 가게 한다면, 이는 인종 및/또는 출신 국가를 근거로 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또한 차별금지법 위반은 학교가 특정 보호 계층의 학생의 정책 위반을 간과하기로 결정한 반면, 다른 보호 계층의 학생에 대해서는 같은 정책을 엄격하게 시행할 때 발생합니다.

예시:

교직원이 꽉 끼는 바지를 입은 여학생에게 "꽉 끼는 옷차림" 금지 규칙을 시행하면서 꽉 끼는 바지를 입은 남학생에게는 그러하지 않은 경우 혹은 브래지어 끈이 보이는 여학생에게 속옷 노출 금지를 시행하면서 사각 팬티가 보이는 남학생에게는 그러하지 않은 경우, 이는 성별을 근거로 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직원이 지속적으로 흑인 및 라틴계 여학생을 학교 복장 규정을 어긴 것으로 훈육하지만 백인 여학생이 비슷한 복장을 하는 것은 간과하는 경우, 이는 인종 및/또는 출신 국가를 근거로 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 경비원 혹은 안전요원이 지속적으로 흑인 학생들에게 복도 통과표 또는 학생증을 요구하는 반면 백인 학생들에게는 아무 요구사항 없이 복도를 걸어다니게 하는 경우, 이는 인종을 근거로 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NJ DIVISION ON CIVIL RIGHTS

데이터 출처 및 자세한 정보

시민권리부의 새로운 학교 훈육 시 차별 요소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훈육 시 차별 요소 안내서
교직원의 편견의 증거 중점

교직원의 훈육 정책 집행이 차별적인 경우(예를 들면, 정책이 겉으로는 중립적이라 할지라도 교직원, 교사, 경비원, 학교 전담 경찰관 혹은 여타 직원이나 대리인이 보호 계층의 학생을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훈육하는 경우) 학교는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한 학생에 대한 학교의 훈육이 해당 학생의 인종, 출신 국가, 성별, 장애 혹은 기타 보호되는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학생에 대한 학교의 훈육이 해당 학생의 인종, 출신 국가, 성별, 장애 혹은 기타 보호되는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 결정하는 데에 있어 시민권리부는 학교 관계자의 편견을 암시하는 모든 증거(의도적이든, 암시적이든 또는 무의식적이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시:

만약 교사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다른 유색 인종 학우에게 인종적 비방을 한 것에 대해 다루지 않고 유색 인종 학생에게 훈육을 시행하는 경우, 이는 학생 훈육이 인종적 요소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인종적 혹은 민족적 요소에 기반을 둔 따돌림 혹은 위협 혐의에 대해 괴롭힘, 협박, 따돌림 조사를 시행하지 않는 학교가 유색 인종 학생을 괴롭힘, 협박, 따돌림 사건 혐의로 훈육하는 경우, 이는 학생 훈육이 인종적 요소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는 추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훈육 과정에 포함된 관계자 누구라도 학생이 혐의를 받는 잘못된 행동을 한 순간부터 훈육을 시행할 때까지 학생에게 인종적 혹은 여타 편견에 기반한 비방을 하는 것은 차별금지법 위반입니다.

그러한 행위는 차별 대우의 강력한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훈육 과정 중 관계자가 편견에 기반한 비방을 하는 것은 차별금지법하의 적대적인 환경 위협을 근거로 별도의 주장을 하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NJ DIVISION ON CIVIL RIGHTS

데이터 출처 및 자세한 정보

시민권리부의 새로운 학교 훈육 시 차별 요소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훈육 시 차별 요소 안내서

차별적 과정 중점

교직원의 학생 훈육 과정이 차별적인 경우(예를 들면 해당 학칙이나 규정에 따라 과정상 차이가 필요하지 않는 한, 교직원이 특정 보호 계층 학생에게 다른 보호 계층 학생과 다른 훈육 과정을 적용하는 경우) 학교는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교직원이 특정 인종, 출신 국가, 성별, 장애 혹은 여타 보호되는 특징을 가지는 학생을 훈육 시 연방 혹은 주의 절차상 요건을 따르지 않고 다른 인종, 출신 국가, 성별, 장애 혹은 여타 보호되는 특징을 가지는 학생을 훈육 시에는 이러한 요건을 따르는 경우 발생합니다.

예시:

교직원이 백인 장애 학생에게 필수 서면 통지 및/또는 표시를 일반적으로 제공하지만 흑인 장애 학생에게는 서면 통지 및/또는 표시 제공을 소홀히 하는 경우, 이는 인종을 근거로 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흑인이 아닌 학생에게는 정학 조치를 내릴 지 결정하기에 앞서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일반적으로 제공하지만 흑인 학생에게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인종을 근거로 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보호되는 특징은 학생의 행위가 연방 혹은 주의 절차상 요건을 만족하는지에 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시:

흑인 학생 혹은 장애 학생이 그들의 존재가 “지속적인 위험” 또는 “지속적인 혼돈”을 제기한다는 근거로 정학 조치 전 비공식적 해명 기회를 거절 당했지만 객관적인 상황이 이러한 결론의 근거가 되지 않는 경우, 학교의 행위는 인종 혹은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다른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하지도 않고 총기에 대한 무관용 법률을 위반하지도 않은 행위로 흑인 유치원생에게 정학 조치를 내리는 경우, 주 법은 보통 그러한 상황에서의 유치원생에 대한 정학 조치를 금지하므로 이는 인종을 근거로 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NJ DIVISION ON CIVIL RIGHTS

데이터 출처 및 자세한 정보

시민권리부의 새로운 학교 훈육 시 차별 요소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훈육 시 차별 요소 안내서

불평등 효과 분석 중점

차별금지법하에 학교는 해당 관행이나 정책이 중요하고 타당하며 차별적 요소가 없는 이해관계를 획득하는 데에 필수적임을 보여줄 수 없는 한, 흑인 학생, 유색 인종 학생, 장애 학생, 성소수자 학생 또는 여타 모든 보호 계층 학생에게 불평등 효과를 지닌 훈육 정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설령 그렇더라도 고발자가 중요하고 타당하며 차별적 요소가 없는 이해관계를 획득할 수 있는 덜 차별적이고 동등한 효과를 지닌 대체 수단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경우, 학교의 훈육 정책은 여전히 차별금지법하에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평등 효과 차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책이나 관행이 실제로 혹은 예측상 보호 계층에 속한 이들에게 불균형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면 해당 정책이나 관행은 불평등 효과를 지닙니다(예를 들면, 해당 정책이나 관행이 다른 학생들에게보다 보호되는 특성을 지닌 학생들에게 더 심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예시:

상당한 일련의 증거가 "무관용" 학교 훈육 정책이 백인 학생에 비해 흑인 학생 및 다른 유색 인종 학생에게 불평등한 비율의 정학 및 퇴학 조치를 지속적으로 초래함을 보여줍니다. 그 증거들을 감안하면 무관용 정책을 채택하겠다는 학교의 결정은 그 자체로 불평등 효과를 지닐 수 있습니다.

학교의 기능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핵심적인 이익의 경우, 학교의 이익은 중요합니다. 진실되며 가짜 혹은 거짓이 아닌 경우, 학교의 이익은 합법적입니다. 또한 이익의 타당성이 보호되는 특성을 근거로 차별하지 않는 경우, 학교의 이익은 비차별적입니다.

예시:

학교는 모든 학생과 교사에게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하고 합법적이며 비차별적인 이해관계를 가집니다.

정책이나 관행이 모든 학생과 교사를 위해 안전한 학습 환경을 얻고자 하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실행한다면, 해당 정책이나 관행은 오직 모든 학생과 교사를 위해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학교의 이익을 획득하는 데에만 필수적입니다. 또한 불평등 효과를 지닌 학교의 관행 또는 정책의 타당성은 경험적 증거(예를 들면, 가설적 혹은 추측에 근거하지 않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시:

학생의 반항에 대해 "무관용" 접근법을 택하는 학교의 정책 또는 관행이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학교에서 주장한다면 무관용 정책이 학생과 교사를 위한 안전한 학습 환경을 효과적으로 조성한다는 경험적 근거를 시사해야 합니다.

NJ DIVISION ON CIVIL RIGHTS

STATE OF NEW JERSEY DEPARTMENT OF EDUCATION

데이터 출처 및 자세한 정보

시민권리부의 새로운 학교 훈육 시 차별 요소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훈육 시 차별 요소 안내서
불평등 효과를 지닌 정책 중점

차별금지법하에 학교는 해당 관행이나 정책이 중요하고 타당하며 차별적 요소가 없는 이해관계를 획득하는 데에 필수적임을 보여줄 수 없는 한, 흑인 학생, 유색 인종 학생, 장애 학생, 성소수자 학생 또는 여타 모든 보호 계층 학생에게 불평등 효과를 지닌 훈육 정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설령 그렇더라도 고발자가 중요하고 타당하며 차별적 요소가 없는 이해관계를 획득할 수 있는 덜 차별적이고 동등한 효과를 지닌 대체 수단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경우, 학교의 훈육 정책은 여전히 차별금지법하에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평등 효과 차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정책은 불평등 효과를 지닐 수 있습니다.

학교가 **이미 해당 정책을 시행했으며** 자체 훈육 데이터가 불평등함을 드러내는 경우, 혹은

학교가 해당 정책 또는 관행이 특정 보호 계층 학생에게 다른 학생들보다 더 심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은 현재 흑인 학생, 다른 유색 인종 학생, 장애 학생, 성소수자 학생 또는 여타 모든 보호 계층 학생에게 불평등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책 또는 관행을 열거한 불완전한 목록입니다.

- 무관용 정책
- “반항”, “무례함”, “ 품행 나쁨”과 같이 사소한 혹은 주관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 정학 또는 퇴학 조치를 허가하는 훈육 정책
- 학교 전담 경찰 혹은 여타 경찰에게 특히 비폭력적이고 마약과 관계 없는 학생의 위반 행위에 대해 훈육을 시행하거나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의 행위
- 종종 “격리 공간”의 활용이라고 언급되는 학교의 통제 및 고립 행위
- 법원 위탁 필요성에 관한 개별적이며 사례별 결정 과정을 포함하는 교육부 규칙에서 약술하는 절차를 먼저 따르지 않고 법원 혹은 경찰에 무단결석한 학생을 인계하는 학교의 행위.

NJ DIVISION ON CIVIL RIGHTS

데이터 출처 및 자세한 정보

시민권리부의 새로운 학교 훈육 시 차별 요소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